

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 
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의 안 번호	2180
-----------	------

2021년 2월 25일  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안 자 : 추승우 의원 외 11명

나. 제안일자 : 2021년 2월 5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2월 9일

라. 상정일자

○ 제299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(2021년 2월 25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추승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교육시설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

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운수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

#### 나. 주요골자

- 대중교통 이용자 및 운수종사자의 건강보호 증진을 위해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(안 제5조)
-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연수기관의 보건위생 증진 대책 마련 및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(안 제5조의2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)

#### 다.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1. 2. 16. ~ 2021. 2. 23.
- 제출의견 : 의견 없음

**라.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 : 원안 동의**

- 감염병 발생시 일시적인 교육 중단 및 온라인 교육 실시 근거 마련
-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, 약품 등 확보 예산 지원근거 마련
- '20년 코로나 19에 따라 온라인교육 및 감염병 예방교육 기 실시한 바 있으며, 연수기관 방역조치 시행중으로 개정 조례안 시행에 문제없음

## 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### 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운수종사자 교육과 관련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교육기관의 방역 조치 강화 및 온라인 교육 실시근거 마련을 통해 운수종사자를 비롯한 운송수단 이용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

### 나. 검토 의견
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5조<sup>1)</sup> 및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9조<sup>2)</sup>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통안전수칙, 서비스의 자세, 운송질서 확립 등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
- 이에 서울시는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현행 조례 제4조<sup>3)</sup>에 따라 연수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문화교육

- 
- 1)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5조(운수종사자의 교육 등) ①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 1.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.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. 교통안전수칙 4. 응급처치의 방법 등
  - 2)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9조(운수종사자의 교육 등) 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. 1.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.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. 화물운수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
  - 3) 「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연수기관의 지정 등) ① 시장은 지정하는 연수기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.

원 및 교통연수원은 개인·법인택시와 화물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신규, 보수, 수시로 나누어 주기별로 실시하고 있음

**※ 참고 :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연수기관의 명칭 및 위치 등**

구분	교통문화교육원	교통연수원
운영기관	(사) 교통회관 위탁운영 (’20. 3. 1 ~ ’23. 2. 28)	(사) 교통회관
위치	관악구 남현1길 38-10	송파구 올림픽로 319
규모	대지 1,650㎡ 건물 5,222㎡	대지 13,132㎡ 건물 5,884㎡
교육대상	개인택시, 화물	법인택시, 화물
운영인력	1원장, 1부장, 3팀, 17명	1원장, 1부장, 3팀, 12명

- 현재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한 강화된 교육이 필요하지만 '20년도 교통문화교육원 및 교통연수원의 교육과정에는 코로나 19 방역 지침을 일부 포함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정식 교과목 수준의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
- 또한, 최근 버스, 택시 등 운수종사자들의 감염 사례<sup>4)</sup>가 발생하여 서울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운수종사자 관련 교육과정에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이며, 현행 조례<sup>5)</sup>에서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
4) 강남구 소재 법인 택시(면허대수 93대, 근무자 137명) 확진 사례 : 총 10명

5) 「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운수종사자의 교육) 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따라서,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교육 과정에 감염병 예방관리 등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운수종사자는 물론 관련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에도 일조할 수 있는 만큼 동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
  
- 이 밖에도 관련 연수기관의 집합교육과 관련하여 해당 교육시설에 방역 물품 등을 비치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온라인 교육<sup>6)</sup>의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

---

6)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운수종사자 온라인교육 계획 택시물류과-27372(2020. 7. 9.)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.

② 연수기관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분야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연수기관 보건위생 대책 마련)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운수종사자 및 연수기관에 대한 보건위생 증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육시설 방역에 필요한 장비,약품 등의 확보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교육시설에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제2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,약품 등이 상시 비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교육실시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교육을 중단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운수종사자의 교육) ① (생략)  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② (생략)  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5조(운수종사자의 교육) ① (현행과 같음)  <u>② 연수기관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분야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</u>  <u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u></p> <p><u>제5조의2(연수기관 보건위생 대책 마련)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운수종사자 및 연수기관에 대한 보건위생 증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</u>  <u>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육시설 방역에 필요한 장비,약품 등의 확보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</u>  <u>③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교육시설에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제2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,약품 등이 상시 비치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</u>  <u>④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교육실시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</u></p>

일시적으로 교육을 중단하거나 인  
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  
할 수 있다.